

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3월 12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3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박순영)

□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【 재산의 취득 1건 】

○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2,300백만원

- 위 치: 강서구 가로공원로78가길 5(화곡동 362-116) (소요예산)

- 사업규모: (매입) 토지 189.3㎡, 건물 86.95㎡

※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은 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계획 수립

3. 참고사항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○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□ 주요내용

○ 「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」의 건은

- 고객 주차시설이 없는 화곡중앙시장에 주민 편의를 위하여 고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

- 위치는 가로공원로78가길 5(화곡동 362-116번지)이며

-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임

- 사업규모는 토지 189.3㎡와 건물 189.3㎡ (지상1층)이며

- 소요예산은 총 23억원으로 국비 13억 8,000만원, 시비 5억 5,200만원, 구비 3억 6,800만원임

□ 종합의견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하고,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이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
- 당초 ‘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’ 공모가 선정되어 2019년 11월 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얻었으나, 2020년 소유자와의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가 결렬되어 신규 부지확보¹⁾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
-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건은 고객용 주차장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화곡중앙시장 이용 고객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임

1) 사업 변경사항

구분	당 초	변 경
위치	강서구 가로공원로78길 49-1 강서구 가로공원로78길 49-3	강서구 가로공원로78가길 5 (화곡동 362-116)
사업내용	(매입) 토지 335.2㎡, 건물 335.2㎡ (신축) 335.2㎡(지상1층, 13면)	(매입) 토지 189.3㎡, 건물 86.95㎡ (신축) 189.3㎡(지상1층, 9면)
사업예산 (재원)	2,300백만원 (국비 1,380, 시비 552, 구비 368)	

- 화곡중앙시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개별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, 인근 화곡7-1 공영주차장에서는 정기권 주차만 허용하는 실정으로

-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자주식 주차장이 확보되면 시장 방문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참고1

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서



토지이용계획서

소재지	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2-116번지		
지목	대	면적	189.3 m ²
개발공시지가 (㎡당)	3,155,000원 (2021/01)		
지역지구등 지정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	도시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, 중요시설물보호지구(공향) 가축사육제한구역(지역경제과 확인 요망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수평표면구역(수명표면)<공향시설법>, 상대보호구역(2014-12-22) (강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	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			

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약칭: 공유재산법)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. 다만,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.